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7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8.

발 의 자:김상욱・김선교・조지연

박준태 • 박덕흠 • 김예지

최은석 · 강대식 · 김기현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긴급구조기 관(이하 "긴급구조기관"이라 함)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, 경찰청·시·도경찰청·경찰서(이하 "경찰관서"라 함)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.

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, 일부 위치정보사업자 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.

이에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

화하고,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, 제29조제6항 및 제39조제4호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제1항 또는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전단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,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한다.

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 인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 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제29조제5항 중 "있으며,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

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"를 "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10항) 중 "제7항"을 "제8항"으로 한다.

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 보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"제29조제11항"을 각각 "제29조제12항" 으로 한다.

제31조 중 "제29조제7항"을 "제29조제8항"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"제29조제7항"을 "제29조제8항"으로 한다.

제3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제29조제8항"을 "제29조제9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"제29조제11항"을 "제29조제12항"으로 한다.

4의2.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

제41조제5호 중 "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"을 "제29조제8항"으로 한다. 제43조제2항제12호 중 "제29조제6항"을 "제29조제7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과징금의 부과 등) <u><신</u>	제14조(과징금의 부과 등) ① 방
<u>설></u>	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
	자등이 제29조제6항을 위반하
	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
	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
	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
	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
	치정보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
	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
	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
<u>①</u> · <u>②</u> (생 략)	②·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
	과 같음)
③ <u>제1항 또는 제2항</u> 에 따른	<u>④</u> 제1항부터 제3항까지
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	
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	
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	
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	
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	
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	
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	
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	
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	

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.
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<u>제1항</u>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~ 3. (생략)
- ⑤ <u>제1항 및 제2항</u>에 따른 과 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-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

⑤제1항 및
<u>제2항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⑥</u> 제1항부터 제3항까지
<u>⑦</u> <u>제1항부</u>
터 제3항까지
<u>⑧</u> <u>제1항부</u>
터 제3항까지

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된기간에 과징금과 <u>제6항</u>에 따른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⑧ (생략)

- 제29조(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 치정보의 이용) ① ~ ④ (생략)
 -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수 있으며,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자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		- <u>제7항</u> -
	· 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	
제	위한	개인위
	치정보의 이용) ① ~ ②	
	과 같음)	
	(5)	
	있다.	
	<u> </u>	

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

⑥ ~ ⑨ (생 략)

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,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,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① (생략)

제30조(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) ① (생 략)

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,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기술으로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기술의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보고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31조(비용의 감면) 위치정보사

위치정보사업자는 지체 없이	
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	
$\underline{ 7} \sim \underline{ 0}$ (현행 제 6 항부터 제 9	
항까지와 같음)	
<u> </u>	
<u>제8항</u>	
◎ (현행 제11항과 같음)	
제30조(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	
방식 등) ① (현행과 같음)	
②	
- <u>제29조제12항</u>	
제2	
 9조제12항	
<u>.</u>	
· ③ (현행과 같음)	
제31조(비용의 감면)	
101-11-11-11	

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 -----제29조제8항-----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 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 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 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 다. 제32조(통계자료의 제출 등) ① 제32조(통계자료의 제출 등) ① ------<u>제</u>29조제8항-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 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 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 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 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3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9조(벌칙) -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4의2.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 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5. <u>제29조제9항</u>-----5.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 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

목적에 사용한 자

6.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	6. 제29조제12항
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	
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	
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	
공하거나 제공받은 자	
제4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 제41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의 월급에 시한다. 1. ~ 4의2. (생 략)	 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	5. 제29조제8항
5.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	J. <u>^ 293_^ 0%</u>
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	
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	
<u>항</u> 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	
부한 자	
제43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43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<u>제29조제6항</u> 을 위반하여 개	12. <u>제29조제7항</u>
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	
보하지 아니한 자	
13. ~ 15. (생 략)	13. ~ 1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	l .